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0. 12. 14  
시민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1. 28.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 11. 28.
- 다. 상정일자 :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2000.12.14)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가. 제안이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허가증 게시 의무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허가증 게시 의무를 삭제함.(안 제4조 제3항)
- 별지 제2호 서식 "가축사육허가증" 중 연도표시의 "19"는 삭제함.(안 제2호 서식)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김건재 전문위원)

○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2000. 1. 28 법률 제6223호)등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호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으로 하고, 안 제4조제3항 중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허가증 게시 의무를 삭제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 답변요지(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도시지역은 가축사육이 제한되며 소, 말, 양 등 허가없이 키우는 것 제한됨.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허가증 게시의무가 불필요한 것인지?
- 답변요지(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허가를 득하였으면 되고, 음식점처럼 가축사육장에 게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취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는 지시가 있었음.
- 질의요지(박상수 위원) : 관내 가축사육 허가 난 곳이 있는지?
- 답변요지(박귀식 산업위생과장)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인자 : 200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 이유

행정자치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허가증 게시의무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 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허가증 게시의무를 삭제함(안 제4조 제3항)

나.별지제2호서식 “가축사육허가증” 중 연도표시의 “19”는 삭제함(안 제2호 서식)

3. 개정근거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9.2.8 법률 제5864호) 제34조제1항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 6. 참고사항

- (1)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0.10.25~2000.11.14)결과,특기할 사항 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제4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증”의 제3호 및 하단의 연도표시 “19”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사육허가)</b>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u>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생 략)</p> <p>2. <u>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부 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u></p> <p><b>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②(생략)</b></p> <p>③<u>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하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u></p>	<p><b>제3조(사육허가)</b>—————                  ————— <u>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p> <p>1.(현행과 같음)</p> <p>2. <u>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공판장,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및 축산법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u></p> <p><b>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②(현행과 같음)</b></p> <p>③<u>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b>가축사육허가증</b>				<별지 제2호 서식>  <b>가축사육 허가증</b>									
제 호				제 호									
1.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1. 성 명 : (한자) 주민등록번호									
2. 사육장 소재지 :				2. 사육장 소재지 :									
3. 허 가 기 간 : 19 . . . 부터 19 . . . 까지				3. 허 가 기 간 : . . . 부터 . . . 까지									
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				4. 축사 및 가축사육 규모									
구분	축 사			사 육 두 수									
축종	부지 면적	동수	전평	성축	자축	계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 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19 . . .</div>							서울특별시마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 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 .</div>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㉔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㉔						